

피네보(주)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피네보(주)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2019.11.20

- 다 음 -

1. 상 호 : 피네보(주)

2.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, 내용 등 업무범위

- 카드결제 승인·중계시스템 구축·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, 결제승인·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

3.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

- VAN사의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국내 카드사 및 신용카드가맹점

4.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

- 카드결제 승인 및 승인취소 등 결제정보 송수신 내역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록하면서 카드사의 매입 업무를 위한 데이터를 동시에 생성

5.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
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1항·제2항,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·제3항,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2 제1항 및 별표1의2

【법】

제27조의2(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) ①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. (이하 생략)

【시행령】

제9조의2(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)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다른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정보기술분야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

2.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

가.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장비

나.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

다. 정전·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와 보완장비

③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【감독규정】

제5조의2(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) ①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<별표1의2>와 같다.

6. 부가조건

- **(법령상 등록 의무 이행)** 현행법상 VAN사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인적요건을 2분의 1로 완화(자본금 20억원→10억원, IT전문인력 10인→5인)하고 물리적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은 클라우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, 기타 등록의무·절차 및 결격요건 등은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
- **(단말기 교체 의무 및 가맹점 수 제한)**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로 신청인의 VAN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VAN 서비스를 제공받던 신용카드가맹점이 원활하게 다른 VAN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비용으로 신용카드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,

- 신청인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동 비용 부담이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가맹점 수를 제한적으로 운영*

* 최초 등록시(자본금 10억원) VAN 서비스 제공 대상 오프라인 가맹점 수를 2만개로 제한하고, 이후 자본금 5억원 증액시마다 1만개씩 상향 조정

- (대리점에 대한 조건부 업무위탁) 신청인이 가맹점 모집·관리 등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VAN대리점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 종료로 인해 다른 VAN사로 계약 이관시 이에 적극 협조하고 VAN 서비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일체의 불이익을 가맹점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업무위탁 계약에 반영
- (가맹점에 대한 고지) 신청인이 카드사 및 신용카드가맹점과 VAN서비스 계약 체결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고지

7. 지정일 : 2019. 11. 20.

8.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